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241 발의연월일: 2024. 09. 24.

발 의 자: 강득구·이상식·문정복

김준혁 • 이개호 • 송재봉

민병덕ㆍ이학영ㆍ박 정

윤종군 · 김주영 · 박홍배

이강일 • 권칠승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기후위기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산업 종사자가 입을 수 있는 직·간접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규정함.

그러나 보다 직접적인 피해로서 기후위기와 극단적 기상이변 발생으로 인한 폭염·한파, 가뭄·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최근 폭우로 인한 반지하주택 침수와 인명피해, 이른바 '쪽 방촌'의 폭염·한파 기간 온열·한랭질환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 취약계층의 피해는 심화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기후위기에 대한 대처능력이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음. 자연재해에 취약한 계층과 현행법상 협의의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취약계층을 포괄하여 "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그 중 자연재해에 취약한 계층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정의함.

또한,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국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43조의2·제43조의3 신설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의2 및 제1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2의2. "취약계층"이란 기후위기가 직접적으로 초래하는 기상이변· 자연재해 등 기후영향에 취약한 계층·지역이나 기후위기에 대응 하기 위한 에너지·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 을 수 있는 지역·산업과 그 종사자 등 기후위기의 직·간접적 영향에 취약한 산업·계층·지역 등을 말한다.
- 12의3. "기후위기 취약계층"이란 기후위기에 따른 부정적 기후영향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능력이 취약한 계층으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노인,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 생물 학적 취약계층
 - 나. 옥외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 층
 - 다. 상습수해지역 · 노후화주택 등 취약지역 거주자

-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 제3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의2. 기후위기와 기상이변에 따라 발생하는 폭염·한파, 가뭄·홍수 등의 자연재해에 취약한 생물학적·사회경제적 계층이나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하 "기후위기 취약계층"이라 한다)에 대한 기후위기 파급효과 및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제10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의2.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기후위기·기상이변 및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 제고대책에 관한 사항
- 제11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의2.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기후위기·기상이변 및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 제고대책에 관한 사항
-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3조의2(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기후위기·기상이변 및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 제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자연재해 노출 및 피해와 적응역량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기관·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범위, 시기·주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3조의3(기후위기 취약계층의 보호대책)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기후위기·기상이변 및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적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하 "기후위기취약계층 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③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제1항 중 "취약한"을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혀 행	7l) 7-l 0l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12의2. "취약계층"이란 기후위
	기가 직접적으로 초래하는
	기상이변ㆍ자연재해 등 기후
	영향에 취약한 계층ㆍ지역이
	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
	한 에너지 • 산업구조 전환 과
	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산업과
	그 종사자 등 기후위기의 직
	• 간접적 영향에 취약한 산
	<u>업·계층·지역 등을 말한</u>
	<u>다.</u>
<u><신 설></u>	<u>12의3. "기후위기 취약계층"이</u>
	<u>란</u> 기후위기에 따른 부정적
	기후영향에 상대적으로 민감
	하게 반응하고 대처능력이
	취약한 계층으로 다음 각 목
	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가. 노인,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장애

13. ~ 17. (생 략) 제3조(기본원칙) 탄소중립 사회로 의 이행과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 3. (생 략) <신 설> 인 등 생물학적 취약계층 나. 옥외근로자, 기초생활수 급자, 노숙자 등 사회・경 제적 취약계층

다. 상습수해지역·노후화주 택 등 취약지역 거주자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취약계층

13. ~ 17. (현행과 같음)

제3조(기본원칙)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기후위기와 기상이변에 따라 발생하는 폭염·한파, 가뭄·홍수 등의 자연재해에 취약한 생물학적·사회경제적 계층이나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하 "기후위기 취약계층"이라 한다)에 대한 기후위기 파급효과 및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4. ~ 8. (생 략)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생 략)

② 국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2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략)

- 6. ~ 11. (생략)
- ③ ~ ⑤ (생 략)

제11조(시·도 계획의 수립 등) 제11조(시·도 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신 설>

- ② 시 · 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 3. (생략)

<신 설>

4. ~ 9. (생 략) ③ ~ ⑥ (생 략) <신 설>

4. ~ 8. (현행과 같음)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현행과 같음)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기 후위기ㆍ기상이변 및 자연재 해에 대한 적응역량 제고대책 에 관한 사항
- 6. ~ 11. (현행과 같음)
- ③ ~ ⑤ (현행과 같음)

-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3의2.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기 후위기ㆍ기상이변 및 자연재 해에 대한 적응역량 제고대책 에 관한 사항

- 4. ~ 9. (현행과 같음)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43조의2(기후위기 취약계층 실 태조사) ①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기후위기·기상이변 및 자연재 해에 대한 적응역량 제고에 필 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 하여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자 연재해 노출 및 피해와 적응역 량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 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기관·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범위, 시기·주기, 방법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3(기후위기 취약계층의 보호대책) ①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의 기후위기·기상이변 및 자 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신 설>

제47조(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리 감소,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적 ·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 되는 지역 및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 대책 과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생략)

하고 그 적응역량을 높이기 위 한 대책(이하 "기후위기 취약 계층 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기후위기 취 약계층 보호대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 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① -----취약한 계층 등의 현황과 일자 사회 · 경제적으로 취약한-----

② (현행과 같음)